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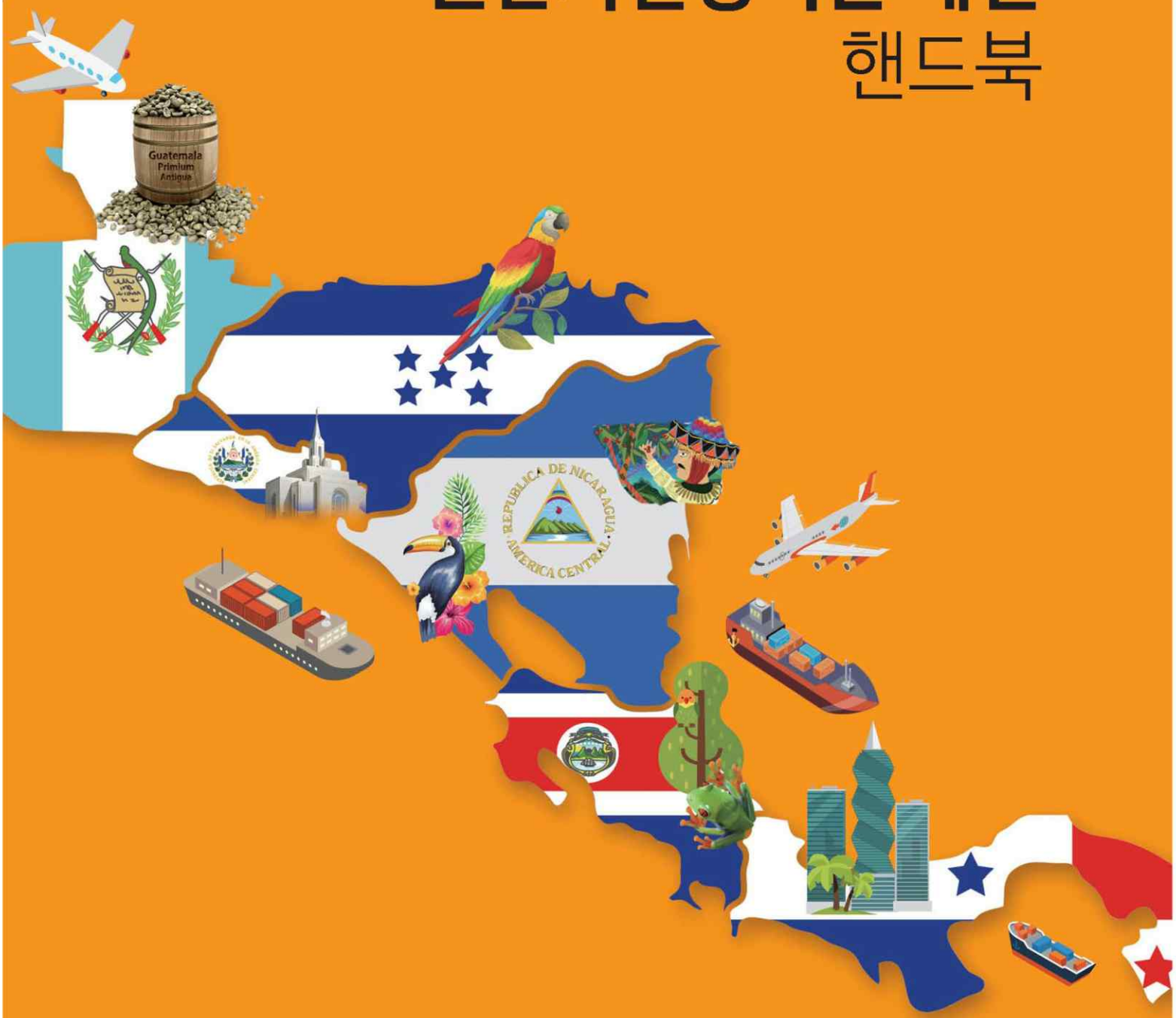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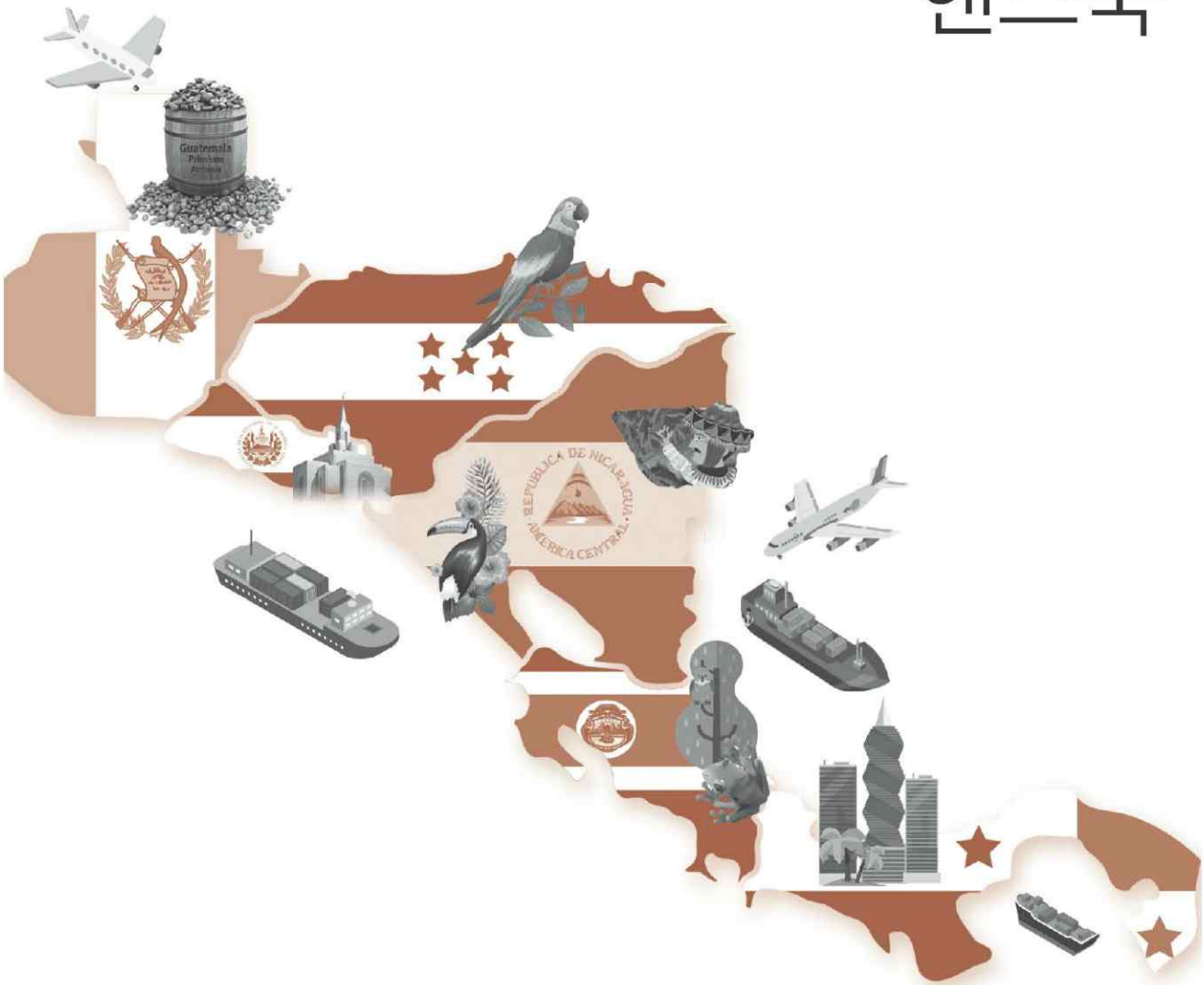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최근 한-중미 FTA에 정식 서명하며, 旣 체결된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에 이어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습니다.

FTA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영토를 세계시장으로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와 2016년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총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FTA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발효될 한-중미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과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FTA 전문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발효될 한-중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설한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중미 FTA 협정문의 원산지결정기준관련 조항들을 해설하고 중미 5개국의 통관환경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한-중미 FTA의 수출유망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상세히 해설하여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FTA 활용의 핵심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은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12.

관세청 자유무역협정기획관 김 재 일

CONTENTS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7
FTA 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10
한-중미 FTA 개요 12

Ⅰ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과 특징
1.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16
2. 한-중미 FTA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18
3.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징 26

Ⅱ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1.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공통기준 28
2.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기준 34
3. 화학공업제품의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가공공정기준) 41
4.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44

Ⅲ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수출유망품목 선정 48
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49

Ⅳ 중미 5개국 통관 환경
1. 코스타리카 62
2. 엘살바도르 64
3. 온두라스 65
4. 니카라과 67
5. 파나마 69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1.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충족을 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일반적으로 HS코드 6단위별로 그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2.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이 정하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농축수산물이나 광산물에 주로 적용된다.

3.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될 때,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류, Chapter)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호, 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소호, Sub-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사례】

● 볶은 커피(제0901.21호)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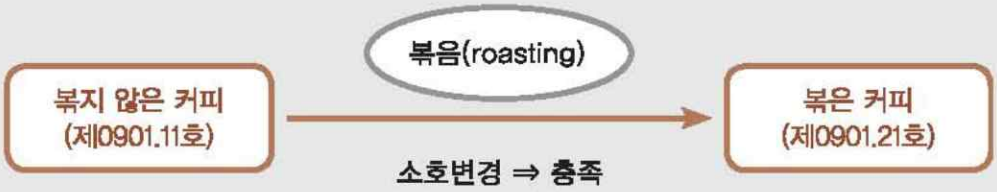

역외산 제0901.11호의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0901.21호의 볶은 커피를 생산한 경우, 6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역내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계산방법에는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집적법(BU,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등이 있다.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사례】

● 가정용 믹서기(제8509.40호) :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완제품 FOB 가격	₩35,000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RVC40) 선택

【원재료 명세 및 가격구성표】

NO.	재료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모터 ASS'Y	8501.10	₩15,000	1 EA	₩15,000	일본(역외산)
2	본체 케이스	8509.90	₩3,000	1 EA	₩3,000	한국

3	PCB	8534.00	₩300	2 EA	₩600	미국(역외산)
4	커터	8208.30	₩200	1 EA	₩200	일본(역외산)
5	컵 ASS'Y	8509.90	₩7,000	1 EA	₩7,000	한국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공제법)} = \frac{\text{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text{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 \frac{35{,}000 - 15{,}800(15{,}000+600+200)}{35{,}000} \times 100 = 54.86\%$$

본선인도가격(FOB)는 ₩35,000, 비원산지재료비는 총 ₩15,800으로 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54.86%)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가공공정기준 (SP,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협정에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이고 주로 섬유류나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6. 선택기준 및 조합기준

선택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조합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FTA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① 적용가능 FTA 협정 확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발효'되어야 협정의 내용이 효력을 발한다. 따라서 '타결' 단계의 협정은 '발효'가 되기 전까지는 FTA를 활용할 수 없다.

②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 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⑥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양식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⑧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⑨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중미 FTA 개요

한-중미 FTA는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1] 참여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개국과 맺은 FTA로서, 중미 5개국[2] 중 파나마를 제외한 4개국은 중미공동관세체계를 적용하는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회원국으로 역외공동관세 및 역내무관세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 아메리카 6개국 지도】

1) 중미경제통합의 일반협약에 의해 세워진 3개의 관리기구 중 하나로서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경제통합 시스템인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각료 회의와 경제 차관 회의 등을 주관하고 회의 결과를 각국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과테말라는 한국과 잔여 쟁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국내 업계 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협상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밝힌 상태이다.

2016년 기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6개국의 총 GDP는 2천400억 달러정도로서 우리나라 GDP의 15%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별 변차가 크고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이 전체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3,680달러로 파나마가 가장 높고 니카라과가 2,151 달러로 가장 낮다.

중미 6개국의 총인구는 4,700만 명 정도로서 우리나라 총 인구 수보다 적으며 과테말라가 1,658만 명으로 가장 많고 1인당 GDP가 높은 파나마가 403만 명으로 가장 적다. 전체 인구수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적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수출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미 FTA 참여국 경제현황 (2016년)】

	GDP(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성장률(%)	인구(만 명)	면적(km2)
한국	1,411	27,538	2.8	5,125	100,210
SIECA	243	–	–	4,706	498,074
엘살바도르	26.8	4,223	2.4	634	21,041
온두라스	21.5	2,361	3.6	911	112,492
니카라과	13.2	2,151	4.7	615	130,375
코스타리카	57.4	11,824	4.3	485	51,100
파나마	55.2	13,680	4.9	403	74,177
과테말라	68.7	4.146	3.1	1,658	108,889

2016년 기준 중남미 지역 GDP 규모 순위는 1위 브라질(1,796십억 달러), 2위 멕시코(1,046억 달러), 3위 아르헨티나(545십억 달러), 4위 콜롬비아(282억 달러), 5위 칠레(247억 달러)이며, 인구 순위는 1위 브라질(20,770만 명), 2위 멕시코(12,750만 명), 3위 콜롬비아(4,865만 명)순으로, 중미 6개국의 총 GDP는 중남미 지역의 6위 인구는 4위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중남미 국가와 맺고 있는 FTA는 한-칠레(2004년), 한-페루(2011년), 한-콜롬비아(2016년) FTA 등이다.

【중미 6개국의 FTA 체결 현황】

국가	FTA 체결 현황
중미 6개국	칠레(200~2012), 파나마(2003~2009), 멕시코(2012~2013), CAFTA-DR(미국 · 중미 · 도미니카공화국), EU(2013)
코스타리카	캐나다(02.11), CARICOM(05.11), 중국(11.8), 페루(13.6), 싱가포르(13.7), EFTA(14.8), 콜롬비아(16.8)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대만(08.3), 쿠바(12.8), Northern Triangle · 콜롬비아(09.11)
과테말라	대만(06.7), 페루(13.6), Northern Triangle · 콜롬비아(09.11)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대만(08.3), 캐나다(14.10), Northern Triangle · 콜롬비아(09.11)
니카라과	대만(08.1)
파나마	중미(03.11), 대만(04.1), 싱가포르(06.7), 칠레(08.3), 페루(12.5), EU(12.6), 미국(12.10), 캐나다(13.4), EFTA(14.8),

자료 : Trade Brief No.35(국제무역연구원, 2016)

【한-중미 FTA 일지】

일자	진행 사항
2010.10	중미 6개국 공동연구 개시
2011.4	공동연구 종료
2012.10	한-중미 FTA 추진 가능성 검토회의 개최(코스타리카)
2015.4	한-중미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2015.6.18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5.7.28~30	한-중미 FTA 예비협의(산살바도르)
2015.9.21~25	한-중미 FTA 제1차 협상(서울)
2015.11.23~27	한-중미 FTA 제2차 협상(엘살바도르)
2016.2.22~26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샌프란시스코)
2016.5.23~27	한-중미 FTA 제4차 협상(테구시갈파)
2016.8.8~12	한-중미 FTA 제5차 협상(서울)
2016.9.26~30	한-중미 FTA 제6차 협상(마나과)
2016.10.24~31	한-중미 FTA 제7차 협상(서울)
2016.11.16	한-중미 FTA 타결
2017.3.12	한-중미 FTA 가서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fta.go.kr)

I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과 특징

1.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2. 한-중미 FTA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3.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징

Ⅰ.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과 특징

1.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한-중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선택기준, 결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을 적용하는 품목은 전혀 없으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의 선택 혹은 결합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단, 엘살바도르는 섬유 · 의류 품목 중에서 다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동일하여 원산지결정기준 구성비율은 동일하다.

HS 2012 기준 총 5,205개 품목 중에 12%에 해당하는 625개 품목이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전체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은 단일 세번변경기준이며, 선택기준이나 결합기준 역시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전생산기준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88%가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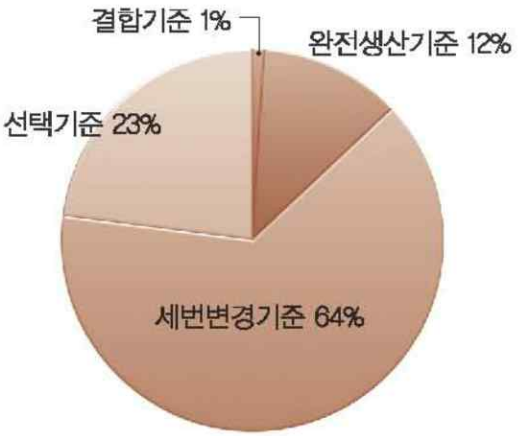

구분	빈도수	비율
완전생산기준	625	12%
세번변경기준	3,344	64%
선택기준	1,197	23%
결합기준	39	1%
총합계	5,205	100%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방식 중 역내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한-중미 FTA 협정문 제3.3조에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 방법으로 공제법과 집적법을 모두 정의하고 있다.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품목에서 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공제법 외에도 집적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적법을 함께 채택하고 있는 품목은 제73류,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88류, 제89류, 제90류, 제93류, 제94류, 제95류에 분류되는 일부 물품들이며, 이러한 품목들은 세번변경기준, 집적법, 공제법 중에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에 유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역내부가가치비율 정의】

제3.3조 역내부가가치비율(RVC)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특정가공공정과 관련하여 제6부에 분류되는 품목들의 경우 화학제품에 대한 특정가공공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된 특정가공공정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배합, 입자크기변화, 표준물질, 이성체분리, 분리금지 등으로 적용가능한 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제39류, 제48류, 제85류의 일부 품목에서도 특정가공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구분	빈도수	비중
CC	589	11.32%
CC or RVC	23	0.44%
CC(특정 세번 제외)	210	4.03%
CC or 특정가공공정	11	0.21%
CTH	1,327	25.49%
CTH or RVC	449	8.63%
CTH(특정 세번 제외)	452	8.68%
CTH+RVC	5	0.10%
CTH or 특정가공공정 or RVC	1	0.02%
CTH or 특정가공공정	23	0.44%
CTSH	761	14.66%
CTSH or RVC	669	12.85%
CTSH or 특정가공공정	27	0.48%
CTSH(특정 세번 제외)	5	0.10%
CTSH(특정 세번 제외) or RVC	1	0.02%
CTSH or 특정가공공정 or RVC	27	0.52%
완전생산기준	625	12.01%
총합계	5,205	100%

2. 한-중미 FTA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MTI 1단위 기준 10개의 산업군으로 분류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중미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의 단일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완성차[HS 제87류, MTI 3단위 기준 741]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채택한 영향이 크다.

【한-중미 FTA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MTI 1단위	산업	유형	빈도수	비중
0	농수산물	결합	5	0%
		선택	18	2%
		세번	387	38%
		완전	617	60%
1	광산물	선택	2	1%
		세번	168	98%
		완전	1	1%
2	화학공업제품	결합	31	3%
		선택	31	3%
		세번	974	94%
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선택	28	16%
		세번	152	84%
4	섬유류	선택	7	1%
		세번	753	99%
5	생활용품	결합	2	1%
		선택	120	55%
		세번	94	43%
		완전	1	0%
6	철강금속제품	선택	29	7%
		세번	383	93%
7	기계류	선택	628	81%
		세번	148	19%
8	전자전기제품	선택	266	73%
		세번	98	27%
9	잡제품	결합	1	0%
		선택	68	26%
		세번	187	71%
		완전	6	2%

(1)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은 다른 산업에 비해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수산물의 약 60%가 완전생산기준이며, 나머지 40%가 단일 세번변경기준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 혹은 결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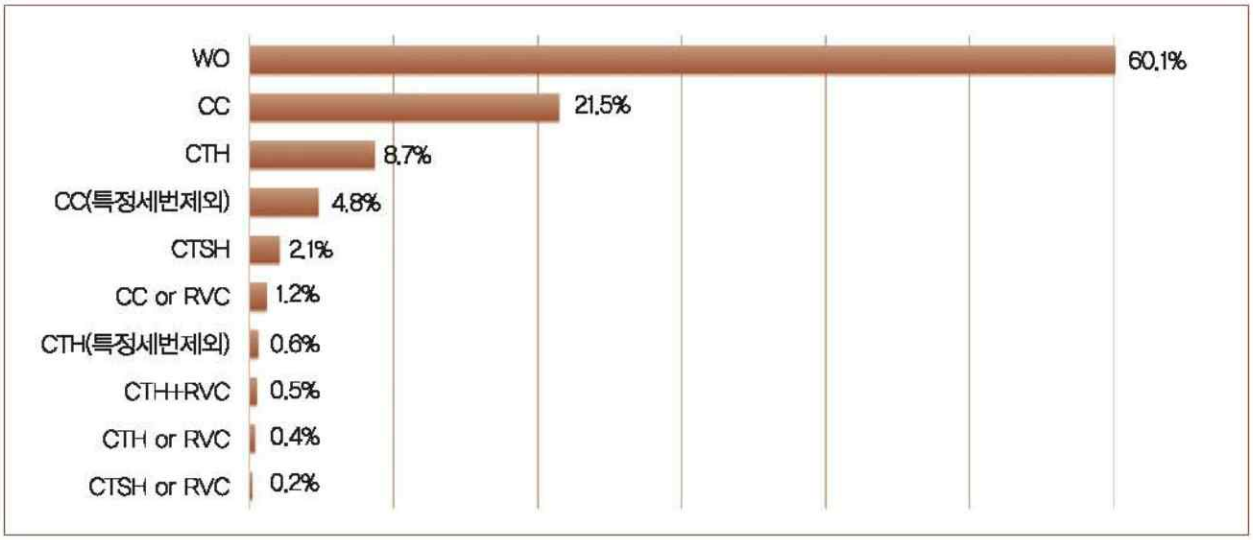

(2) 광산물

광산물은 84%가 4단위, 14%가 6단위, 0.6%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총 98%가 단일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택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40)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제2501.00호의 소금만이 유일하게 완전생산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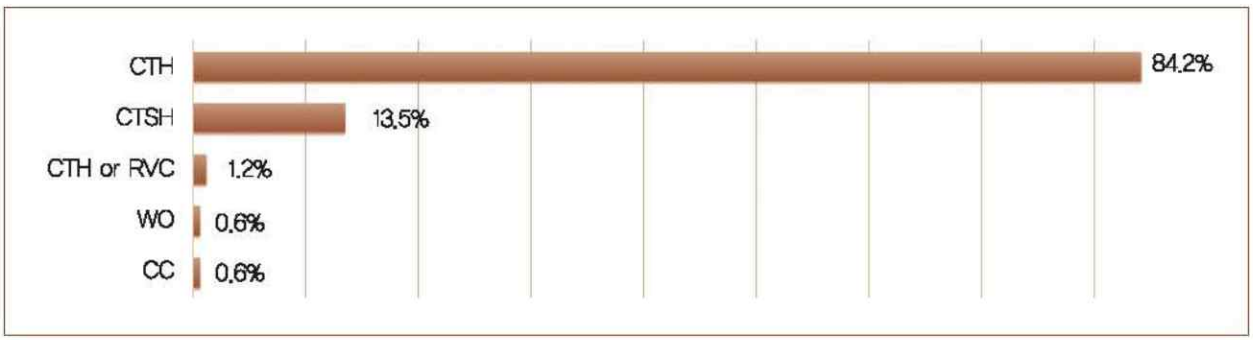

(3) 화학공업제품

화학공업제품은 49%가 6단위, 38%가 4단위, 3.5%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총 91%가 단일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정 세번을 제외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94%가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화학공업제품 중 제39류와 제48류의 일부 품목에 특정가공공정과 세번변경기준의 선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화학공업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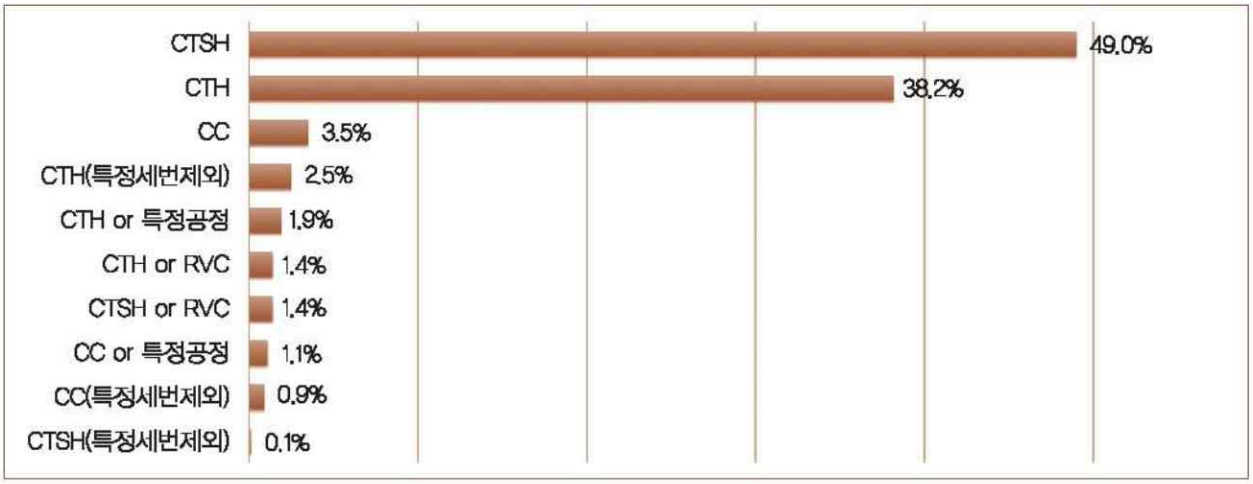

(4) 섬유류

섬유류의 경우 특정세번을 제외한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단위 단일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된 품목은 제9404.30호의 침낭 한 품목이며, 제94류의 3개의 품목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40)의 선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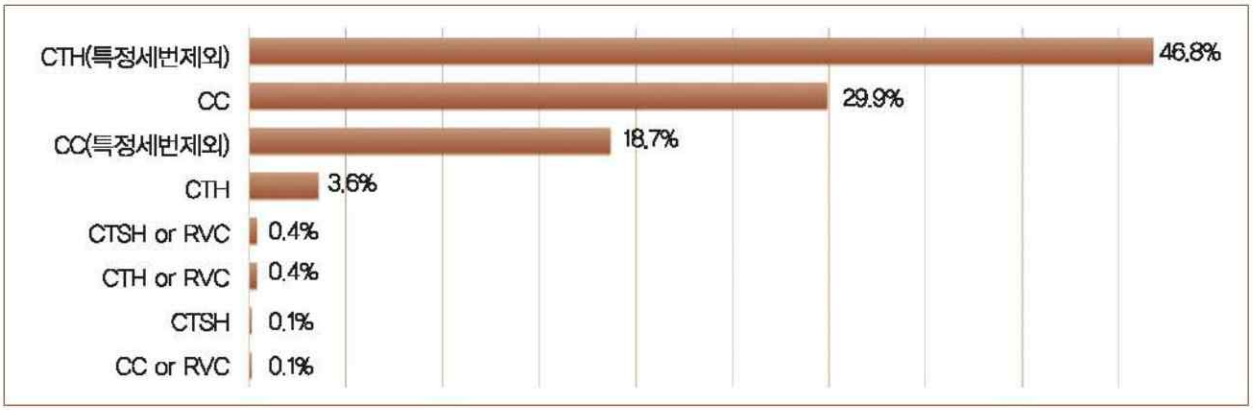

특히, 제54류, 제55류, 제60류, 제61류, 제62류, 제63류에 분류되는 일부 섬유 · 의류 품목에 대해 엘살바도르만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서로 상이한 품목들】

HS 코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5408.10–5408.34	CTH ex 5205~5206, 5401, 5402, 5404, 5406, 5503~5510	CC ex 5205~5206, 5503~5510
5510.11–5510.90	CTH ex 5205~5206, 5402~5406, 5505~5507	CTH ex 5205~5206, 5402~5406, 5503~5507
5516.11–5516.94	CTH ex 5205~5206, 5402~5406, 5509~5511	CTH ex 5205~5206, 5402~5406, 5503~5511
6001.10	CC ex 5205~5206, 5402, 5404, 5406, 5508~5511	CTH ex 5205~5206, 5402~5406, 5503~5511
6001.21–6001.29	CC ex 5205~5206, 5402, 5404, 5406, 5508~5511	CTH ex 5205~5206, 5402~5406, 5503~5511, 5802, 5804.21~5804.29
6001.91–6001.99	CC ex 5205~5206, 5402, 5404, 5406, 5508~5511	CTH ex 5205~5206, 5402~5406, 5503~5511, 5804.21~5804.29
6002.40–6006.90	CC ex 5205~5206, 5402, 5404, 5406, 5508~5511	CTH ex 5205~5206, 5402~5406, 5503~5511
6101.20–6117.90	CC	CC ex 5204~5212, 5401~5408, 5503~5516, 5802, 5804, 6001~6006
6201.11–6217.90	CC	CC ex 5204~5212, 5401~5408, 5503~5516, 5802, 5804, 6001~6006
6301.10–6308.00	CC	CC ex 5204~5212, 5401~5408, 5503~5516, 5802, 5804, 6001~6006
6309.00	CC	CC ex ch.61, ch.62

(5) 플라스틱 · 고무 및 가죽제품

플라스틱 · 고무 및 가죽제품은 59.4%가 4단위, 7.8%가 2단위, 7.2%가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총 74%가 단일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정 세번을 제외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84%가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제품 중 제39류의 23개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의 선택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제40류의 고무제품 중 5개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40) 혹은 공제법(45)의 선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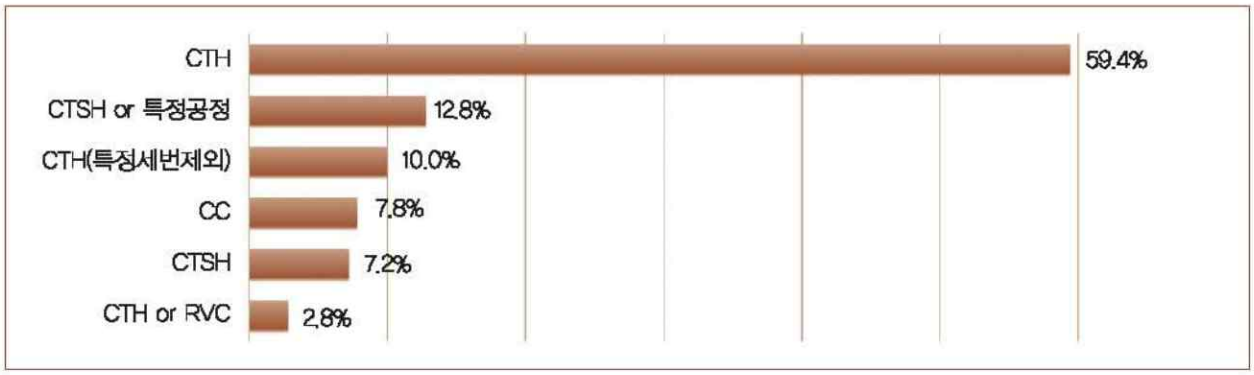

(6) 생활용품

생활용품 전체의 약 68%가 4단위 단일 세번변경기준 및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 및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의 유형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0507.90호에 분류되는 녹용과 녹각만이 유일하게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4811.60호와 제4823.20호의 제품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의 선택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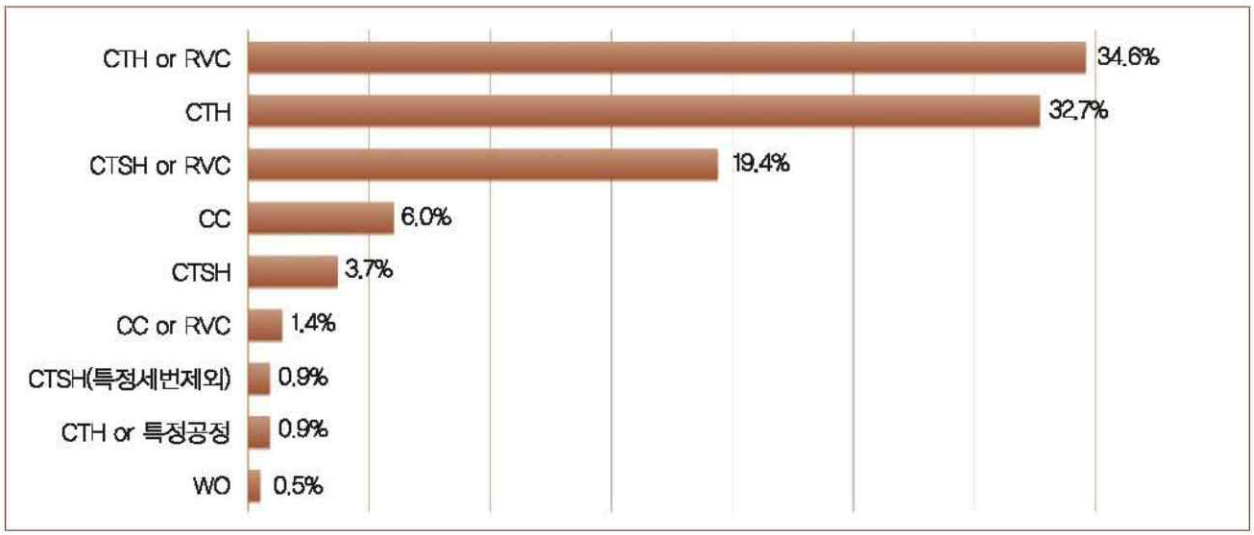

(7) 철강금속제품

철강제품은 63.6%가 4단위, 12.1%가 6단위, 9.7%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총 85.4%가 단일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정 세번을 제외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93%가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부분품과 동 소호에 분류되는 제9401.69호와 제9401.71호의 의자 및 제9402.90호의 병원용 기타 가구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과의 선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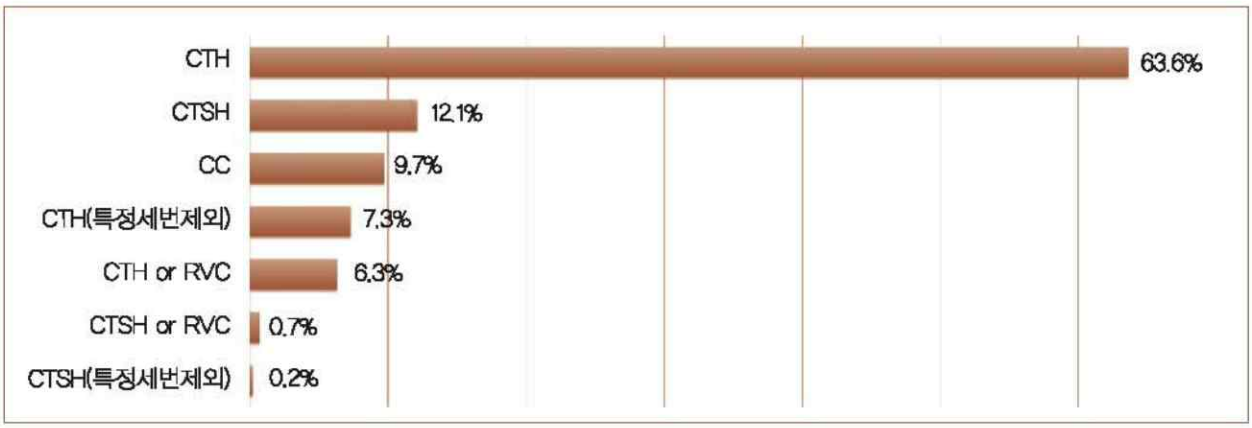

(8) 기계류

기계류의 약 81%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기준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56.1%가 6단위, 42.4%가 4단위, 2.4%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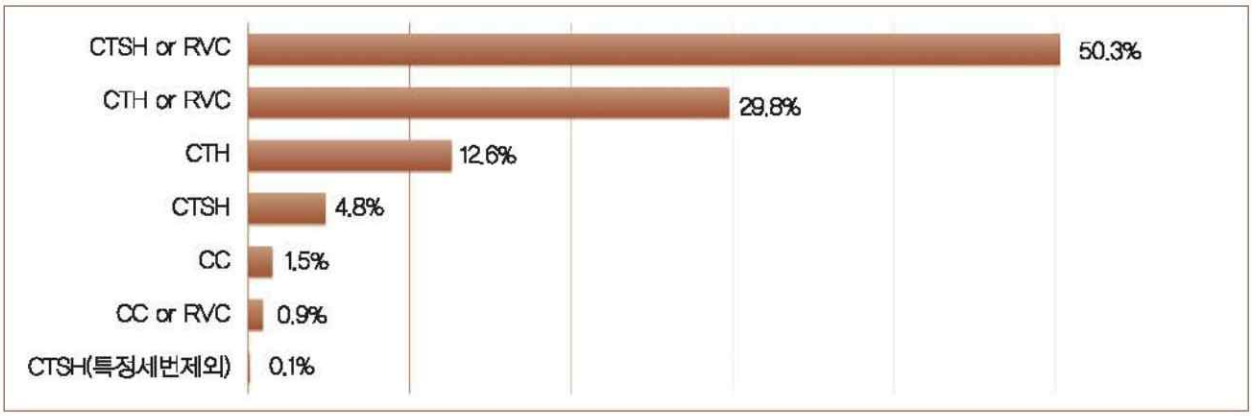

(9) 전자전기제품

전자전기제품은 단일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 및 역내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포함하면 80%가 6단위, 20%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8517.69호 및 제8519호, 제8521호, 제8525호에서 제8528호의 일부 품목은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의 선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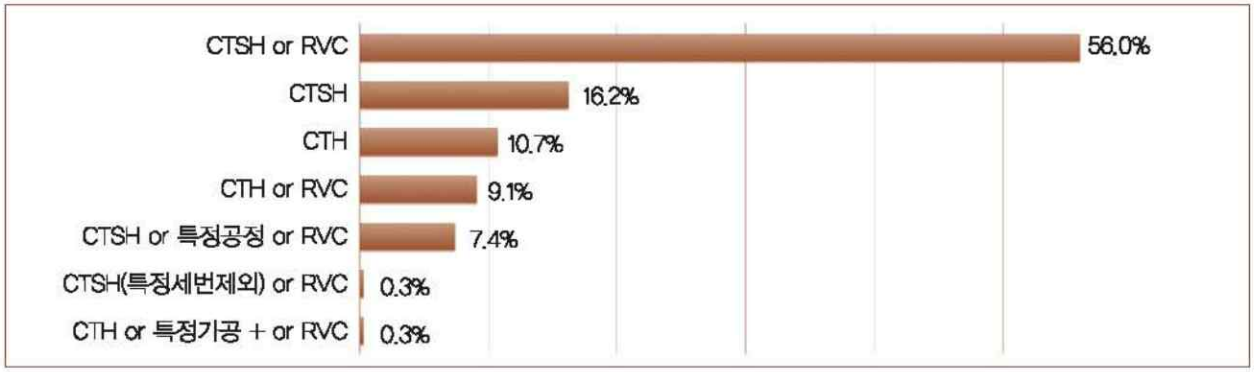

(10) 잡제품

잡제품은 다른 산업에 비해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기준을 포함하여 잡제품의 약 63%가 4단위, 21%가 6단위, 13.3%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3920.73호, 제3921.14호, 제4823.90호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의 선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잡제품 가운데 제0307.49호, 제0410.00호, 제0910.91호, 제1204.00호, 제1205.10호, 제1213.00호 등의 6개의 품목은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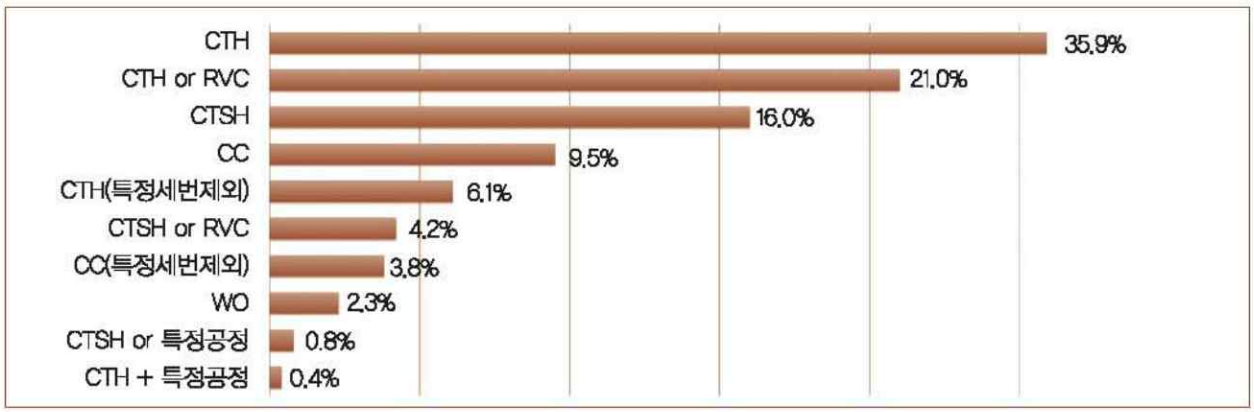

3.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징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주요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한-중미 FTA 협정문에 정의된 "당사국들(Parties)"은 한쪽 당사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공화국과 다른 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협정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개별적으로 간주되어 적용되나,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일반기준 특례기준 중 누적기준과 관련하여, 한-중미 FTA에서는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진 당사국들 간에만 누적을 인정하는 다국 누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9018.12호[초음파 영상진단기]는 당사국들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 or BD40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 경우 코스타리카 등으로부터 초음파기기 부분품 중의 하나인 제8541.60호(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수입, 이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생산 후 엘살바도르로 수출한다면 제8541.60호의 재료는 누적기준을 통해 원산지 재료(역내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비율이 일정부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제54류, 제55류, 제60류, 제61류, 제62류 및 제63류에 분류되는 일부 섬유 · 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만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호에 분류되는 제품을 엘살바도르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된 재료만이 역내산으로 간주됨에 유의해야 한다.

3 한-중미 FTA에서는 여타 중남미 협정과 달리 해당 완성차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8706호(엔진을 갖춘 섀시) 또는 제8707호(차체) 및 제8708호(부분품과 부속품) 등을 역외로부터 조달하여 완성차를 생산할 시 역내 부가가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II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1.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공통기준
2.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기준
3. 화학공업제품의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가공공정기준)
4.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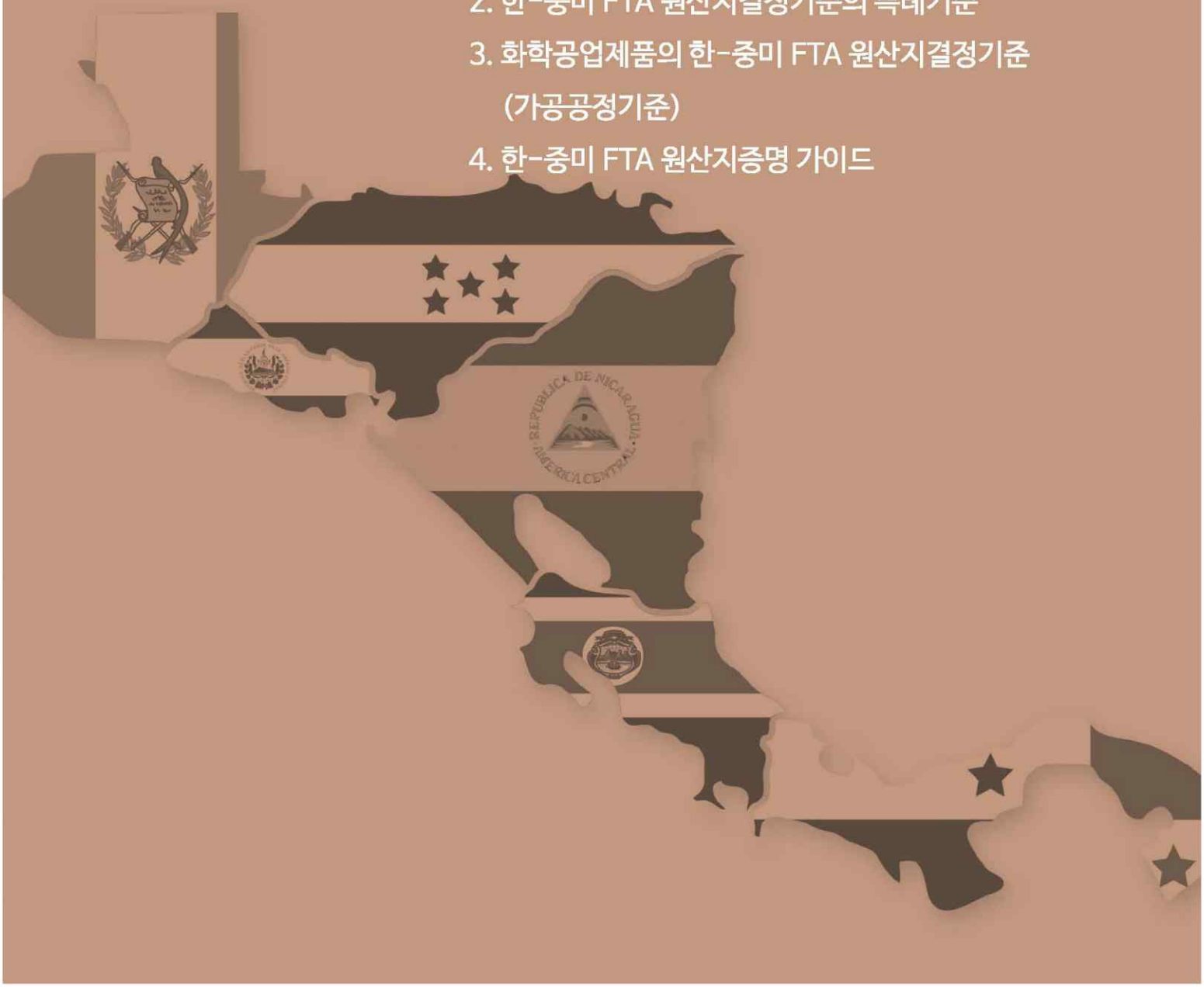

Ⅱ.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양자 모두 충족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일반기준은 다시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일반기준의 공통기준은 원산지상품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규정이나 일반기준의 특례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으로 원산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들이다.

한-중미 FTA 협정문에 정의된 원산지 일반기준의 공통기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旣체결한 FTA의 동 기준을 비교해 보았다.

1.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공통기준

(1) 완전생산기준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旣체결한 FTA에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중미 FTA에서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완전생산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영역의 정의 및 범위】

부속서 1-가 국가별 정의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코스타리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영역

다. 엘살바도르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라. 온두라스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마. 니카라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니카라과 공화국의 영역, 그리고

바. 파나마에 대하여,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한-중미 FTA의 완전생산기준은 한-페루 FTA의 동 기준과 가장 유사하나 한-페루 FTA와 달리 수렵 · 덫사냥 · 어로 · 양식[3] 외에 채집 또는 포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상품에 대해서는 출생 · 사육 · 획득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 취득물품에 대해 달리 규정이 없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문 비교 - 완전생산품 기준】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광물성 생산품	일방 및 당사국내에서 채취된 광물	토양, 수역, 해저 및 해저하부에서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일방 및 당사국내에서 추출 · 채취된 광물	토양, 수역, 해저 및 해저하부에서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식물성 생산품	재배, 수확	재배, 수확, 채집, 수집	재배, 수확	재배, 수확, 채집, 수집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상품	출생+사육[4]	출생+사육+획득		
수렵 · 어로 · 양식	수렵, 덫사냥, 어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포획

3) 양식이란, 특히 정기적인 방류, 급식,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 연체동물 · 갑각류 ·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 치어 ·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3.28조 정의)

4) 한-칠레 FTA에서는 '산 동물'만 규정하고 있어 여타 FTA와 차이 발생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영역 밖 어획물 (역내선박 인정요건)	당사국 등록 + 당사국 국기 게양			
영역 밖 채취상품	개발권을 가지고 채취된 상품	개발권을 가지고 취득 · 추출된 상품	개발권을 가지고 채취 · 추출된 상품	개발권을 가지고 채취 · 추출된 상품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당사국에 의해 획득, 비당사국에 의해 가공되지 않음	규정 없음	당사국에 의해 획득, 비당사국에 의해 가공되지 않음	규정 없음
폐기물 · 부스러기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생산공정 또는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완전생산품 및 그 파생품으로 생산된 상품	완전생산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완전생산품 및 그 파생품으로 생산된 상품	완전생산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2) 역내생산 원칙

역내생산원칙은 당사국 영역 내에서 물품의 생산 · 제조 · 가공 등이 수행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본원칙이나, 한-중미 FTA에서는 역내산 원재료를 수출하여 역외에서 작업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역외가공 허용 지역 및 기준 등의 세부 규정은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칠레 FTA 협정문에는 역외가공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한-페루 및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개성공단지역에 한하여 10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기준 동시 충족 조건으로 OP(Outward Processing)방식의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원산지투입요소 비율을 최종제품 FOB 가격의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역외가공】

제3.15조 역외가공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3-나에 따라 당사국들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속서3-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1.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당사국들의 약속, 그리고 그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2.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후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한반도의 여건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에서의 원산지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3) 충분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은 역내에서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한 공정만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본원칙으로, 한-중미 FTA 협정문에서도 제3.5조에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충분가공 원칙】

제3.5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를 위한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탁, 세척, 먼지 · 녹 · 기름 ·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아.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차. 동물의 도살
   카.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타.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장,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파.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하.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들의 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원산지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가.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나. 단순한 혼합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화학반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중미 FTA의 불인정공정 내역은 한-페루 및 한-콜롬비아의 불인정공정 내역과 유사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두 협정에 비해 더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중미 및 한-페루 FTA의 경우 한-콜롬비아와 달리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문 비교 - 불인정 공정】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 불인정공정 내역 중, **카, 타, 파, 하, 거** 규정 없음	한-중미 FTA 불인정공정 내역 중, **카, 너** 규정 없음

한-칠레 FTA의 불인정공정 규정에는 단순한 혹은 화학반응을 제외한 단순한 혼합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한-중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파)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등이 불인정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운송요건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협정상 규정된 운송요건에 따라 운송된 물품이여야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운송요건】

제3.14조 직접운송

1.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경유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3.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나. 경유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또는
   다.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설립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그리고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만족시키는 모든 입증 서류

운송요건은 일반적으로 협정문에서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고 제3국 경유나 환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유럽형 운송요건과 직접운송원칙을 두지 않고 세관통제 · 경유국 작업 인정범위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 미주형 운송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는 미주형이며,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는 유럽형으로 협정문상에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한-중미 FTA의 직접운송원칙에서는 통과선하증권 및 제품설명, 하역 · 재선적 일자, 선박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서 합의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문 비교 - 직접운송】

협정	비당사국 영역 경유 또는 환적 시 직접운송 인정요건			
	유형/규정	경유국 작업 인정범위	세관통제	추가 충족 조건
칠레	미주형 제4.12조 환적	하역 · 재선적 · 상자포장 · 포장과 재포장 ·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	X
페루	유럽형 제3.14조 직접운송	하역 · 재선적 · 재포장 · 상품보존 필요 공정	○	- 경유국 거래 · 교역 불인정
콜롬비아	유럽형 제3.15조 직접운송	하선 · 운송목적분리 · 재선적 · 상품보존 필요 공정	○	- 경유국 거래 · 소비금지
중미	유럽형 제3.14조 직접운송	하역 · 재선적 · 재포장 · 상품보존 필요 공정	○	- 통과선하증권 제출 - 제품설명, 하역 · 재선적 일자, 선박명 등을 포함한 증명서 제출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형 FTA 원산지규정 · 절차 도입을 위한 현황 비교 분석', 2016, p.221

2.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기준

원산지결정 특례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들로서, 세번변경기준을 완화시키는 최소허용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보충기준인 중간재, 간접재료, 부속품 · 예비부품 · 공구, 포장 · 용기관련 기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누적기준,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관련 기준 등이 있다.

(1) 누적기준

누적(accumulation)은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의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투입요소로 인정하는 것이다. 투입요소는 재료와 공정을 의미하는데 재료누적에 의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용이해지고, 공정누적에 의해서는 가공공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진다.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재료누적과 생산누적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중미 FTA에서는 재료누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진 당사국들 간에만 누적을 인정하는 다국 누적의 형태를 띠고 있다.[5] 특이 사항으로 한국과 최소 1개의 중미 당사국은 양 당사국 모두 무역협정을 체결한 제3국과 원산지를 누적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교차누적의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6]

【한-중미 FTA 협정문 - 누적기준】

제3.6조 누적

1.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또는 한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또는 한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후자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7][8]

2. 한국과 최소 1개의 중미 공화국은 양 당사국 모두 무역협정을 체결한 제3국과 원산지를 누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규약을 개선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9]

(2) 최소허용기준

최소허용기준은 최종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원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비중이 협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하인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기준이다.

5) 제54류~제55류, 및 제60류~제63류에 해당하는 일부 섬유 · 의류 품목들의 경우, 엘살바도르만 다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누적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캐나다 · 중국 · 페루 · 싱가포르 · EFTA ·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교차누적 도입 시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7) 제1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원산지 누적은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진 공화국들 간에만 적용된다.

8)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한 중미 공화국의 상품 또는 재료는 누적하지 아니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국"이란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문 비교 - 최소허용기준】

구분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가격 기준	일반 품목	8%	10%	10%	10%
	농축수산물	1류~24류 : CTSH 충족 시 8%	1류~14류 : 적용제외, 15류~24류 : 10%	1류~24류 : CTSH 충족하면 8% (15류 일부 제외)	1류~14류 : 적용제외, 15류~24류 : CTSH 충족 시 10%
	가격 기준	조정가격	FOB	조정가치	FOB
중량 기준	섬유[10]	8%	10%	10%	10%

한-중미 FTA에서는 FOB 가격기준으로 일반품목의 경우 10% 최소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제1류~제24류)의 경우 제1류에서 제14류를 제외하고 비원산지재료의 소호가 변경된 경우 10% 최소허용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섬유제품(제50류~제63류)의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중간재

중간재는 최종물품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생산하거나 역내에서 생산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중간원재료를 의미한다.

협정상 중간재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완제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자가생산이라 할지라도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 가격을 포함하여 중간재 가격 전체를 원산지재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역내조달방식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11]

한-중미 FTA에서는 자가생산품과 역내생산품 모두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비원산지재료비를 포함한 전체를 원산지재료비로 인정해주는 Roll-up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페루와

10)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을 의미한다.

11) 중간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중간재를 생산할 때 투입된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부가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역내조달방식에 비해 부가가치산정에 불리하게 된다.

한-콜롬비아 FTA와 달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중간재에 대해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원산지 중간재의 경우 그 재료비 전체를 비원산지재료비로 간주하는 Roll-down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굳이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재료비까지 비원산지재료비로 취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료비 항목으로 계산한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문 비교 - 중간재】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중간재 지정의무		O	X	X	X
원산지 상품	자가생산	O	O	O	O
	역내생산	X	O	O	O
비원산지 상품		관련 규정 없음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	관련 규정 없음

(4) 대체가능물품

대체가능물품은 과일, 볼트, 너트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재료를 의미한다.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특례이다.

대체가능물품과 관련하여 한-중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 모두 원산지 상품 및 재료를 대체가능물품으로 인정하고 있고, 평균법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등의 재고관리기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을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대체가능물품】

제3.8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1. 특혜관세대우 부여의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별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5) 간접재료

간접재료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지만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협정별로 간접재료를 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과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으로 나누어진다. 원산지결정시 재료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재료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칠레 FTA에서는 간접재료의 역내·역외산 재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재료로 간주하고 있어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원산지재료비로 계상된다. 반면에 간접재료로 보지 않는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제조 간접비에 계상된다.

【한-중미 FTA 협정문 - 간접재료】

제3.13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2항에 정의된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라. 공구, 금형 및 주형
마.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6)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 등은 해당 상품과 함께 수입되어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않고 그 부속품 등의 가격 및 수량이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 이하일 경우 인정된다. 이러한 부속품 등은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고려되지 않고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만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 등의 원산지지위(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에 따라 해당 상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에 포함시킨다.

한-중미 FTA에서도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 등을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지위 여부를 고려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부속품 · 예비부분품 · 공구】

제3.10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7) 소매용 포장 · 용기[12)]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모든 FTA에서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 · 용기를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으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한-캐나다 FTA[13)] 제외)에만 소매용 포장 · 용기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해당 규정은 소매용 포장 · 용기가 HS통칙 제5호에 따라 해당 상품과 함께 분류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3) 한-캐나다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 원산지판정에서 소매용 포장 ·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중미 FTA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 · 용기에 대한 원산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를 고려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소매용 포장 · 용기】

제3.11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포장 재료 및 용기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가. 제3.1조가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하거나
   나. 제3.1조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하거나
   다. 상품이 부속서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8) 운송 포장 · 용기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운송용 포장 및 용기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지 않으며, 한-중미 FTA 또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 운송 포장 · 용기】

제3.12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운송 중인 상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9) 세트물품[14)]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물품이 하나의 세트로 거래되는 제품으로, 전체세트물품 가치 중 비원산지물품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전체세트물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이다.

한-중미 FTA의 경우 한-페루 및 한-콜롬비아 FTA와 마찬가지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 총 가치[15]의 15% 이하인 경우 전체세트물품을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칠레 FTA의 경우 세트 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품목분류 상 그 세트물품이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다.

【한-중미 FTA 협정문 - 세트물품】

제3.9조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일반해석규칙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총 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3. 화학공업제품의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가공공정기준)

한-중미 FTA에서는 제6부에 가공공정기준을 공통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6부의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생산품의 경우 한-중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제6부의 규칙 1에서 규칙 7까지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물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4) 해당 규정은 세트물품이 HS통칙 제3호에 따라 그 전체가 본질적 특성이 있는 해당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함께 분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15) 한-중미 및 한-페루 FTA의 경우 본선인도가격(FOB),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조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6부

- **제28류** 무기화합물
- **제29류** 유기화합물
- **제30류** 의료용품
- **제31류** 비료
- **제32류** 염료 · 안료, 페인트, 잉크 등
- **제33류** 정유, 조제향료,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 **제34류**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등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s), 효소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물품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한-중미 FTA 협정문 - 화학제품 가공공정기준】

구분	제6부 규칙 내용
규칙1	**화학 반응 원산지**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구분	제6부 규칙 내용
규칙2	**정제** 정제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규칙3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5	**표준 물질**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6	**이성체 분리**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화학제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은 협정별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 콜롬비아의 협정문에서는 제6부(화학공업제품) 및 제7부(플라스틱 · 고무 제품)에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미를 포함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협정문에서는 제6부에만 가공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협정에서는 가공공정기준을 공통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협정별 화학제품 가공공정기준 비교】

	한-중미	한-미국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캐나다
화학반응	28~38류	28~38류(제3823호 적용제외), 39~40류	28~38류 (제3823호 적용 제외)	28류, 29류
정제	28~38류	28~38류, 39~40류	28~35류, 38류	28류, 29류
혼합배합	30류, 31류, 33~38류 (제3808호 제외)	30류, 31류, 33~38류(제3808호 제외), 39~40류	30류, 31류, 제3302호, 제3502.20호, 제3506호~제3507호, 제3707호	–
입자크기변화	30류, 31류, 33류	30류, 31류, 33류, 39류	30류, 31류	–
표준물질	28~38류	28~38류	28~32류, 35류, 38류	–
이성체분리	28~38류	28~38류, 39류	28~32류, 35류	29류
분리금지	28~38류	28~38류	28~38류	28류, 29류

4. 한-중미 FTA 원산지 증명 가이드

1 한-중미 FTA의 원산지 증명요건은 한-콜롬비아와 유사하며, 수출자 · 생산자가 〈부속서 3-다〉의 서식을 영어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2 수입 과세가격이 1천 달러 미만인 경우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문 비교 - 원산지 증명 요건】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발급방식	자율발급			
발급주체	수출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서식	통일증명서식	〈부속서 4-나〉양식	〈부속서 3-다〉양식	
유효기간	서명일로 부터 2년	발급일로 부터 1년	서명일로 부터 1년	
제출면제	미화 1천 달러 이하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단일양식】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선택): 이메일:		2. 포괄증명기간: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 / /부터 / / /까지			
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선택): 이메일:			
5. 물품명세:	6. HS 품목 번호	7. 원산지 기준	8. 생산자	9. 역내가치포함 비율 (RVC)	10. 원산지 국가
11. 비고: 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이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 상품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쪽으로 구성된다.					
12. 서명권자의 서명:		회사:			
이름:		직위:			
연도 월 일 날짜: / / /		전화번호: 팩스(선택):			

III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수출유망품목 선정
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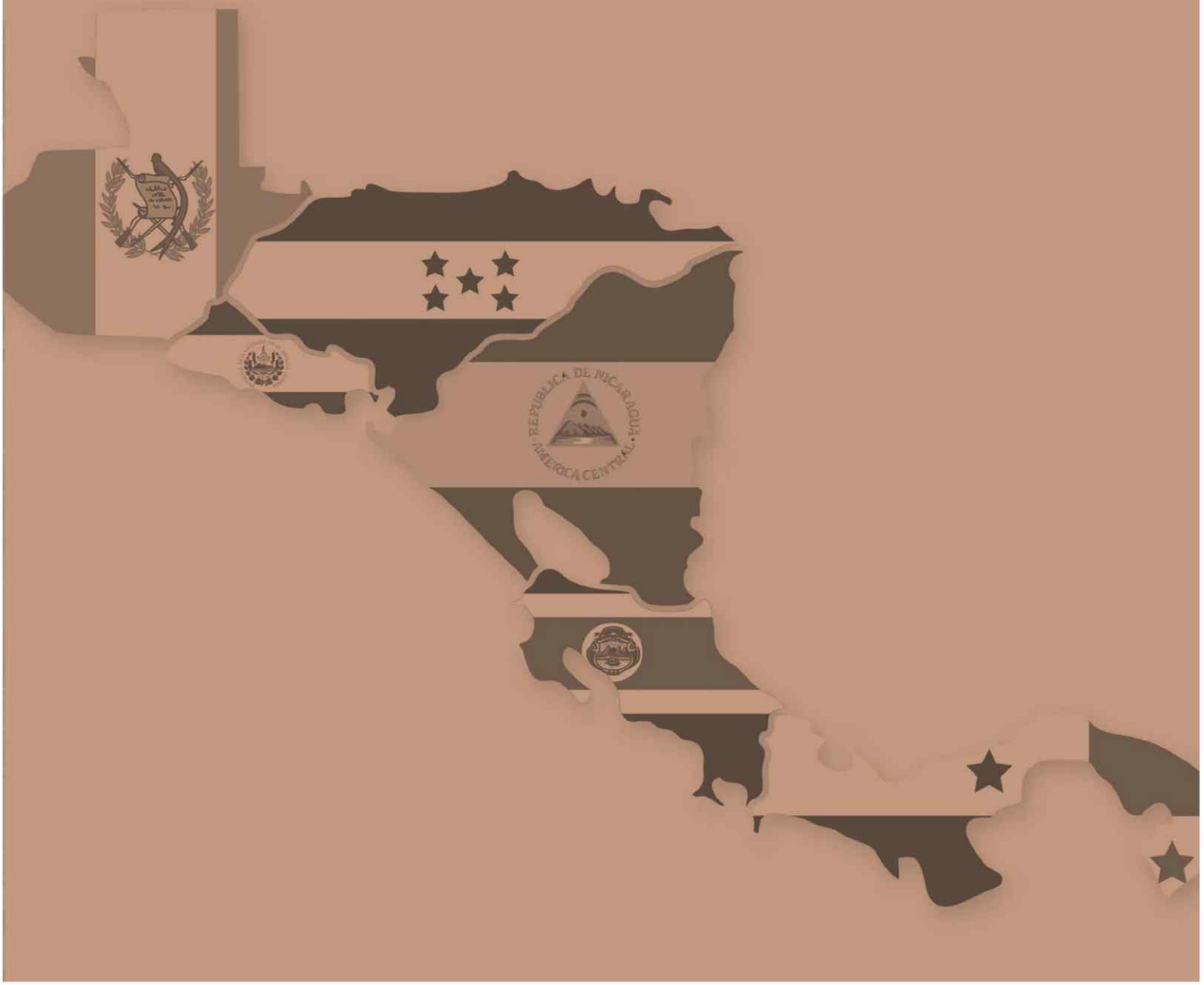

Ⅲ.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수출유망품목 선정

한국의 수출역량(MCA, 수출증가율), 수입시장 여건(시장점유율), FTA 무역장벽 효과(관세인하 폭) 등의 순위를 평균한 종합 순위를 바탕으로 상위 랭크된 품목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는 방법론이 사용된다.

다만, 한-중미 FTA는 아직 발효전이이므로 발효전후의 수출액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출액 변화를 제외한 시장비교우위지수, 수입점유율, 관세인하 폭 등의 순위를 산술평균하여 종합순위를 산출하였다.

【수출유망품목 선정기준】

한국의 수출역량	시장비교우위지수(MCA)
수입시장 여건	한국의 현지국 수입시장 점유율
FTA 무역 장벽효과	FTA에 따른 관세인하 폭

【한-중미 FTA 수출유망품목 종합순위 산출방법】

1/3[시장비교우위지수 순위] + 1/3[수입점유율 순위] + 1/3[관세인하폭 순위]

HS 2012 기준 총 5,182개의 품목 중 종합순위 상위 3.8%인 200개 품목 중에서, 중미 5개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對중미 수출액이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94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능한 동일 산업군에서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하였다.

2. 수출유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1. 중미 5개국 대상 수출유망품목 종합순위 산출
2. 중미 5개국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2016년 對중미 수출액이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선별
3. 동일 산업 군에서 선별된 품목 중 중소기업 수출 상품 우선 선발

【對 중미 5개국에 대한 10대 수출유망품목】

산업	세번	상품명	해당 제품
정밀화학	3402.11-0000	유기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 활성제, 벤젠 술폰산 등
정밀화학	3822.00-1011	진단용 시약	의료용 진단시트, 진단 키트, 진단 시약, 테스트 스트립 등
고무	4012.12-000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버스용 · 화물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섬유	6306.19-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캠핑용품	방수포 · 천막 · 차양 등
비금속	8311.10-9000	비금속 용접봉	용접봉, 용접 소모품, 중고 용접 와이어 등
기계	8450.20-0000	세탁기	가정용 세탁기, 자동 세탁기, 드럼 세탁기 등
전기전자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자동차 배터리, 중고 배터리, 축전지 등
자동차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자동차 클러치, 자동차 예비 부품, 클러치 키트, 클러치 마스터 등
정밀기기	9018.12-0000	초음파 영상 진단기	진단 초음파 스캐너, 초음파 시스템, 초음파 검사 장치 등
가구	9403.90-0000	가구와 그 부분품	사무용 가구 부품, 기타 가구 부품, 가구 프레임 등

1	유기계면활성제				
물품정보		산 업	정밀화학		
		상품명	유기계면활성제		
		품 명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 제외), 조제 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보조조제세제 포함) · 조제 청정제
				11	유기계면활성제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398.51	3,337.52	159.98	971.54	83.57
MFN	8	8	8	7.5	8
특혜세율	0	0	0	7	0
원산지결정기준	CTSH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402.11호부터 제3402.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FTA 활용정보

원산지 판정

[제3402.11-0000호]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

계면활성제는 발생되는 계면활성이온의 종류에 따라 크게 음이온(anionic) · 양이온(cationic) · 비이온(non-ionic) 활성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합성세제 · 분산제 · 농약 등에 활용되며 주요 원재료는 혼합 알킬벤젠(제3817.00호)과 황(제2503.00호) 및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제2815.12호) 등이다.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완제품과 다른 6단위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혼합 알킬벤젠(제3817.00호)과 황(제2503.00호) 및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제2815.12호)은 완제품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제3402.11호)와 6단위가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만약 동일한 6단위 소호의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완제품 FOB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2 진단용 시약

물품정보

산 업	정밀화학		
상품명	진단용 시약		
품 명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 ·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 보증된 참조물질
		00	

FTA 활용정보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257.87	299.91	160.45	657.67	156.27
MFN	8	8	8	0	8
특혜세율	0	0	0	0	0
원산지결정기준	CTH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16.00호부터 제3823.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 판정

[제3822.00-1011호] 진단용 조제시약(플라스틱 시트 등으로 보강한 것)

제3822.00호에는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의학 · 과학 · 실험용 등으로 물리적 · 생화학적 과정과 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주요 원재료로는 해당 물리화학적 변화를 검출 · 진단할 수 있는 제28류(무기화합물) · 제29류(유기화합물)나 제30류(의약품)의 화학물질과 이 물질들을 침투시키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 종이(제48류)나 플라스틱(제39류) 등의 보강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동 물품에서는 완제품과 동일한 호인 제3822호를 제외한 다른 호로부터 동 물품이 생산되어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일반적인 원재료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대부분 다른 류에 해당되는 원재료가 사용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은 용이해 보인다. 물론 제3822호의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완제품 FOB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제3822호에 분류되는 진단용 · 실험실용 시약의 경우 시약이 침투 · 도포된 부분과 기타 진단을 위한 어떠한 다른 구성요소들이 세트나 키트 형태로 조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한-중미 FTA에서는 HS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으로 인정되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 총 가치의 15% 이하라면 그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3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물품정보

산 업	고무		
상품명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품 명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12	버스용 · 화물자동차용

FTA 활용정보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1,739.84	248.18	160.60	1,437.22
MFN	8	8	8	8.3	8
특혜세율	0	0	0	7.5	0
원산지결정기준	CTH ex 4001, 4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001호나 제4011호의 것은 제외) 소호 제4012.11호부터 제401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 판정

[제4012.12-0000호] 화물차용 재생타이어

재생타이어는 수명이 다한 타이어의 낡은 트레드(접지면)을 제거한 후 새로운 트레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따라서 신품 타이어와 달리 제조공정과 투입원재료 또한 상이한데, 주요 원재료로는 중고 타이어(제4012.20호)와 타이어트레드(제4012.90호) 및 이들이 서로 붙을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쿠션 검(제4005.10호) 등이 있다.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제4001호와 제4011호를 제외세번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건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특정세번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해당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이 원재료로 투입될 시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물품에서는 제4001호나 제4011호가 원재료로 투입될 시 반드시 원산지재료이어야 하나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완제품 FOB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해당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중고 타이어(제4012.20호)와 타이어트레드(제4012.90호)는 완제품인 화물차용 재생타이어(제4012.12호)와 4단위가 동일하다. 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고 타이어(제4012.20호)와 타이어트레드(제4012.90호) 모두 원산지재료 이어야만 하며 이 경우에도 최소허용기준 범위 내에서의 비원산지재료 사용은 가능하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4	방직용 섬유로 만든 캠핑용품			
물품정보		산 업	섬유	
		상품명	방직용 섬유로 만든 캠핑용품	
		품 명	6306	방수포(tarpaulin) · 차양 · 차일, 텐트, 돛[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용 캠프용품
			19	합성섬유 외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1.44			1,792.64	
MFN	13	13	13	10	13
특혜세율	0	0	0	0	0

FTA 활용정보	
원산지결정기준	(CR, HN, NI, PA) CC (SV) CC ex 5204~5212, 5401~5408, 5503~5516, 5802, 5804, 6001~6006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301.10호부터 제6308.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12호, 제5401호부터 제5408호, 제5503호부터 제5516호,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301.10호부터 제6308.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 판정	**[제6306.19-0000호] 합성섬유 외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방수포 · 천막 · 차양** 방수포 · 천막 · 차양 등이 분류되는 제6306.1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 단일기준,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제5204호, 제5401호 등을 제외세번으로 규정한 조건부 2단위 세번변경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히, 엘살바도르로의 수출에 있어서 해당 물품은 합성섬유 외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방수포 · 천막 등이 분류되기 때문에 제54류나 제55류에 분류되는 제외세번의 영향은 없으나 기타 제5204호부터 제5212호, 제5802호 및 제5804호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미 FTA에서 원산지 누적은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진 체약국들 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경우 누적기준을 통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 기타 체약국의 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5	비금속 용접 봉

물품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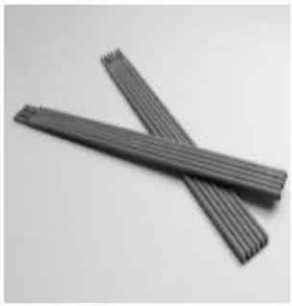

산 업	비금속		
상품명	비금속 용접 봉		
품 명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 · 봉 · 관 · 판 · 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

FTA 활용정보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84.87	2,368.78	87.67	222.74	112.06
MFN	8	8	8	0	8
특혜세율	0	0	0	0	0
원산지결정기준	CTH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11.10호부터 제831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 판정

[제8311.10-9000호] 비금속으로 만든 용접봉(전기아크용접용)

전기 아크 용접은 전기 아크가 발생시키는 강력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금속을 녹여 용접 모재를 접합시키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것이 용접봉이며 용접 모재의 표면과 용접봉 사이에 아크가 발생하여 모재가 접합된다. 이러한 용접봉의 주요 원재료로는 철강의 봉(제7213.91호), 페로망간(제7202.11호), 백운석(제2518.10호), 장석(제2529.10호), 운모가루(제2525.20호) 등이 있다.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위의 주요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를 토대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4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대부분의 주요 원재료에 대한 역외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약 제831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완제품 FOB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제83류 물품의 경우 해당 주 규정에 따라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하므로 만약 위의 제시된 원재료와 달리 용접봉의 부분품 형태로 역외에서 조달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을 역내산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허용기준 범위 내에서의 비원산지재료 사용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6	세탁기				
물품정보		산 업	기계		
		상품명	세탁기		
		품 명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 · 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2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1,611.02	109.48	79.89	1,485.66	324.74
MFN	8	8	8	15	8
특혜세율	0	0	0	0	0
원산지결정기준	CTSH or BD4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FTA 활용정보

원산지 판정

[제8450.20-0000호] 세탁기

품목분류상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가 분류되며 동일한 호 내의 제8450.90호에는 세탁기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역외산 부분품의 사용이 최소허용기준 이내로 극히 제한된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 45%)의 선택기준으로 비교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6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해당 완제품의 부분품이 제8450.90호에 특별히 별도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품을 역외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게 되며 다른 류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들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세번변경이 충족되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부분품의 세번변경 여부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모든 부분품들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역내 제조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이 45%이상 발생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모두 모든 부분품을 역외에서 조달하여 사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원산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7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물품정보

산 업	전기전자		
상품명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품 명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FTA 활용정보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1,345.74	836.05	812.46	5,923.91	1,332.20
MFN	8	8	8	15	8
특혜세율	0	0	0	15	0
원산지결정기준	CTSH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7.10호부터 제850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 판정

[제8507.10-0000호]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는 자동차 전원에 쓰이는 동력원으로서 전해액은 황산, 전극은 작용물질을 지지(支持 : support)하고 있는 납판이나 납격자로 되어 있으며 주요 원재료로는 납(제7801.99호), 합성섬유(제5503.20호), 황산(제2807호), 격리판 등 축전지 부분품(제8507.90호), 플라스틱 판 · 시트(제3920.10호) 및 pasting paper(제4804.39호) 등이 있다.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따라서 해당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납(제7801.99호), 합성섬유(제5503.20호), 황산(제2807호), 격리판 등 축전지 부분품(제8507.90호), 플라스틱 판 · 시트(제3920.10호) 및 pasting paper(제4804.39호) 등은 완제품인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제8507.10호)와 6단위가 상이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해당 물품의 경우 축전지 부분품(예 : 용기와 커버 · 납판과 납격자 ·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 등)이 제8507.90호에 분류되고 한-중미 FTA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을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충족할 있다.

또한 만약 동일한 6단위 소호의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완제품 FOB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우 완화된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풀이된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8 클러치와 그 부분품

물품정보

산 업	자동차		
상품명	클러치와 그 부분품		
품 명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FTA 활용정보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500.81	7.47	636.30	1,205.84	129.78
MFN	8	8	8	8.1	8
특혜세율	0	0	0	6.6	0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BD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8.10호부터 제87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원산지 판정

[제8708.93-0000호] 클러치와 그 부분품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에 해당하는 차량(트랙터, 승용차, 화물자동차, 버스 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제8708.93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된다. 클러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클러치 디스크(제8708.93호), 클러치 압력판(제8708.93호), 클러치 케이싱(제8708.93호),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제8708.93호), 릴리스 포크(제8708.93호) 등이 있다.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 40%)의 선택기준이다. 우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면, 해당물품(클러치)의 주요 원재료인 클러치 디스크(제8708.93호), 클러치 압력판(제8708.93호) 등이 완제품인 클러치(제8708.93호)와 4단위를 넘어서 6단위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클러치의 부분품부터 원산지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허용기준(완제품 FOB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반면,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부분품의 세번변경 여부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제8708.93호의 부분품들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역내 제조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이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물품은 부분품 조달경로 및 제조공정 등에 따라 업체마다 유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겠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9	초음파 영상진단기			
물품정보		산 업	정밀기기	
		상품명	초음파 영상진단기	
		품 명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
			12	초음파 영상진단기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1,058.16	57.94	231.42	946.80	69.36
MFN	8	8	8	10	8
특혜세율	0	0	0	8	0
원산지결정기준	CTSH or BD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8.11호부터 제902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FTA 활용정보

원산지 판정

[제9018.12-0000호] 초음파 영상진단기

제9018호는 내과 · 외과 · 치과 · 수의과 등의 의료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제9018.12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Ultrasonic scanning apparatus)가 분류된다. 다만, 제90류 주 규정에 따라 제90류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완제품과 동일한 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9018.12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그 전용 부분품이 함께 분류된다.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 40%)의 선택기준이다. 우선 6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면, 해당물품(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제9018.12호로 함께 분류되기 때문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인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부터 원산지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허용기준(완제품 FOB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반면,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부분품의 세번변경 여부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제9018.12호에 해당하는 부분품들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역내 제조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이 40%이상 발생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물품은 부분품 조달경로 및 제조공정 등에 따라 업체마다 유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겠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10	가구				
물품정보		산 업	가구		
		상품명	가구		
		품 명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0	부분품

구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엘살바도르
수출액	137.13	43.18	128.99	1,018.78	0.29
MFN	8	8	8	15	8
특혜세율	0	0	0	13.5	0
원산지결정기준	CTH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FTA 활용정보

원산지 판정

[제9403-90-0000호] 기타 가구의 부분품

제9403호는 제9401호(의자와 부분품) 및 제9402호(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가구류 및 부분품)에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가구가 분류되는 호로서 제9403.90호는 제9403호 가구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찬장 · 진열장 · 탁자 · 서가 · 스탠드 · 장롱 · 화장대 · 침대 등의 가구의 부분품이 제9403.90호로 분류된다.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가구는 일반적으로 금속류(제15부) · 목재류(제9부) · 플라스틱류(제39류) · 유리류(제70류) 등의 원재료를 바탕으로 생산되므로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가구 부분품과 4단위가 상이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다만, 부분품의 특성상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부분품)를 상호조합하여 또 다른 형태의 제9403.90호의 부분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시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9403.90호의 비원산지 부분품이 사용되더라도 최소허용기준(완제품 FOB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조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 검토를 통해 FTA활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 : HS2012 기준이며, 수출액은 2016년 자료임. 특혜세율은 발효 1년차 세율임. (단위 : 천 달러, %)

IV

중미 5개국 통관 환경

1. 코스타리카
2. 엘살바도르
3. 온두라스
4. 니카라과
5. 파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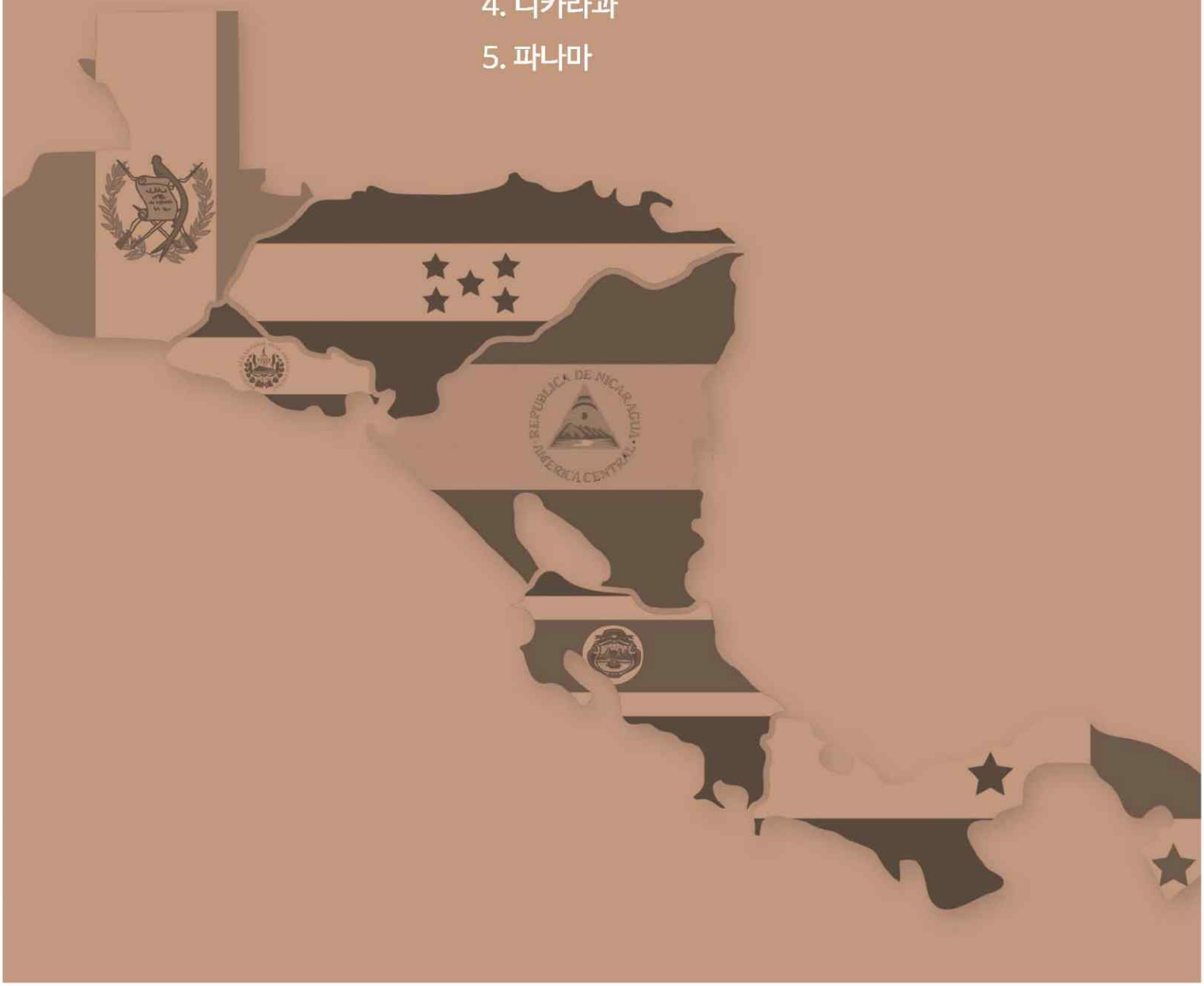

Ⅳ. 중미 5개국 통관환경[16)]

중미 5개국의 수입신고 방법, 통관절차,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의 통관환경을 살펴보았다.

1.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CACM :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의 일원으로, 1963년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 서명한 중미관세코드협정 및 중미관세분류체계(SAC)를 1994년부터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코스타리카 통관절차는 중미관세코드Ⅲ(CAUCA Ⅲ)와 일반통관법[17)]에 의해 시행된다.

(1) 수입신고

코스타리카에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5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반입된 지 90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모든 수입자들은 통관관리체제를 위한 정부기술데이터베이스(TICA : 2005년 이후 관세청이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면장(Import Permits)은 대외무역 단일창구(VUCE 2.0)를 통해 받아야 한다.

16) 중미 5개국 통관환경은 코트라가 2008년에 발간한 「코스타리카(국가정보)」 보고서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협업을 통해 발간한 「2013 외국의 통상환경」, 「2016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정리 하였다.

17) 코스타리카 일반통관법은 2012년 개정되었으며, 통관 시 E-Seal사용, 자체위약금지불(Self-Assessed Penalities) 허용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코스타리카의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 목록

-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18]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그 외 코스타리카법으로 지정된 요청서류

(2)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통관사 선정 → 수입신고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세금 납부 → 세관 서류 검토 → 화물 검사여부 결정 → 화물 검사 → 화물 인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코스타리카의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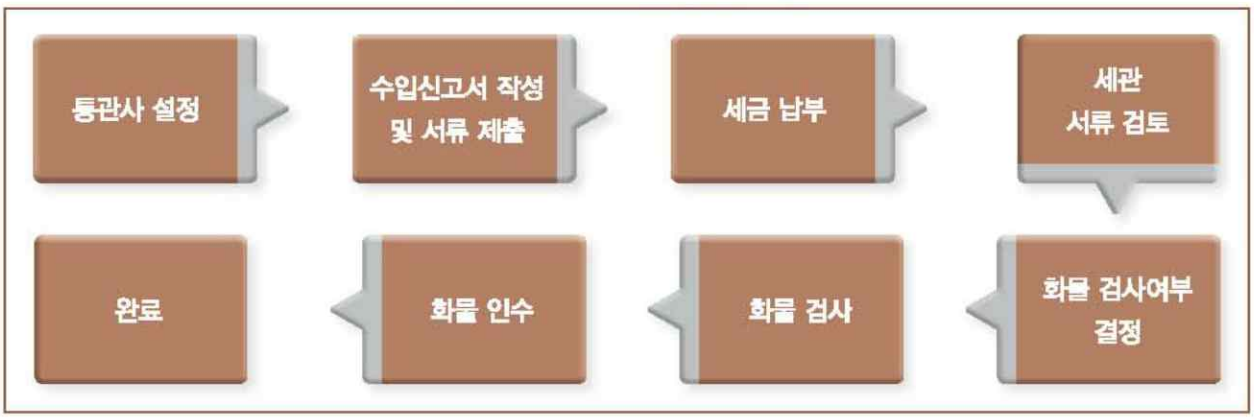

(3) 통관 시 유의 사항

코스타리카는 자유무역을 대외무역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 연료, 알코올, 마약류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코스타리카는 정부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관세 이외에 판매세, 선택소비세, 긴급세(법령 제 6946호) 등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통관 세금이 높은 편이다.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코스타리카 국내 생산업체 또는 관련 조합은 경제부 산하 불공정무역 관행 규제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부가 직권으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8)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 단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신고 단가가 재무부 측 산정 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2.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대외공동관세로 통합시켰다.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역내국가 무역에는 무관세를 적용,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 최대 15%를 실시하고 있다.

(1) 수입신고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다.

(2)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입 → 화물 인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014년 1월 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통관절차】

(3) 물품 검사

일반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 크게 3단계 나누어 심사가 진행된다.

【엘살바도르의 서류 심사 단계】

- 청색신호(green light) :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
- 적색신호(red light) : 화물을 개봉하여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 실시
- 황색신호(yellow light) :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

(4) 통관 시 유의 사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및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라벨에는 제품명, 원재료 및 첨가제 리스트, 유통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동 · 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엘살바도르 내 반입이 가능하다.

3.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제(Co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에서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 수입신고

온두라스 수입신고는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통합세관신고서(Declaration Unica de Aduana, DU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국세청[19] 웹사이트(www.sar.gob.hn)에 접속하여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de

19) 온두라스는 중남미 다수의 나라처럼 국세와 관세업무가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어 있다. SAR 산하에 국제업무를 다루는 국세국과 관세업무를 다루는 관세국이 있다.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에서 적하목록신고(Declaration Manifesto de Carga)을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A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온두라스의 국세청이 분류하는 통관 경로의 종류】

- 녹색경로 지정 :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
- 적색경로 지정 :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서류 심사대상은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중량, 중량 및 관세율 적용 등의 물품의 특징을 확인
- 황색경로 지정 : DU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종이와 서류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세율 등을 확인 한 뒤 통관을 허용

(2)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 구비서류 준비 → 국세청 웹사이트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 접속 → 적하목록신고 확인 및 등록 → 관세 전자납부→ 통관경로 신청 → 부여된 통관경로에 따라 통관 허용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온두라스 정부는 현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처리기간 단축 및 관세 징수 확대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온두라스의 통관절차】

(3) 통관 시 유의 사항

온두라스는 자국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 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나,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또한 국가안보, 환경, 공공보건 등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또한 제한된다. 또한,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4.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 협약'에 따라, 역외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 수입신고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인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에 보관중인 상태가 2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100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니카라과의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 목록】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송장 원본(Original Invoice)
-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니카라과 당국이 발급한 허가서(Permits issued by Nicaraguan authorities)

(2)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관세청에 관련서류(포장명세서, 송장, 수입신고서, 허가서, 증명서 등) 제출 →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 → 납세인식번호 부여 받은 후 관세청에 신고 → 세금 납부 후 화물 수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니카라과의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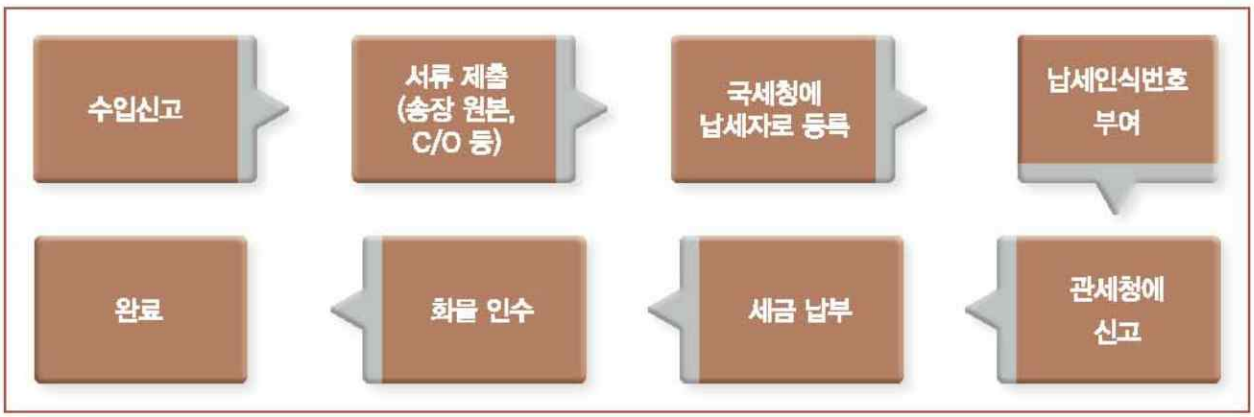

(3) 통관 시 유의 사항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펫 제품, 의류 및 가구 등)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해서는 15% 이내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사치성 소비재에도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불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 된다. 다만,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는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상표표시(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 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에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5. 파나마

파나마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 1996년 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공통규범에 합의하고, 이후 2009년까지 양자 간 시장간섭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양허상황,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결하였다.

(1) 수입신고

파나마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 목록】

-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관세 산정 및 신고양식
- 수입업자 납세증명서
- 관세납부증명서
-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2)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 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 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 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후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 세관에 수입관련 제 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 실시(세관원) → 관세 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파나마의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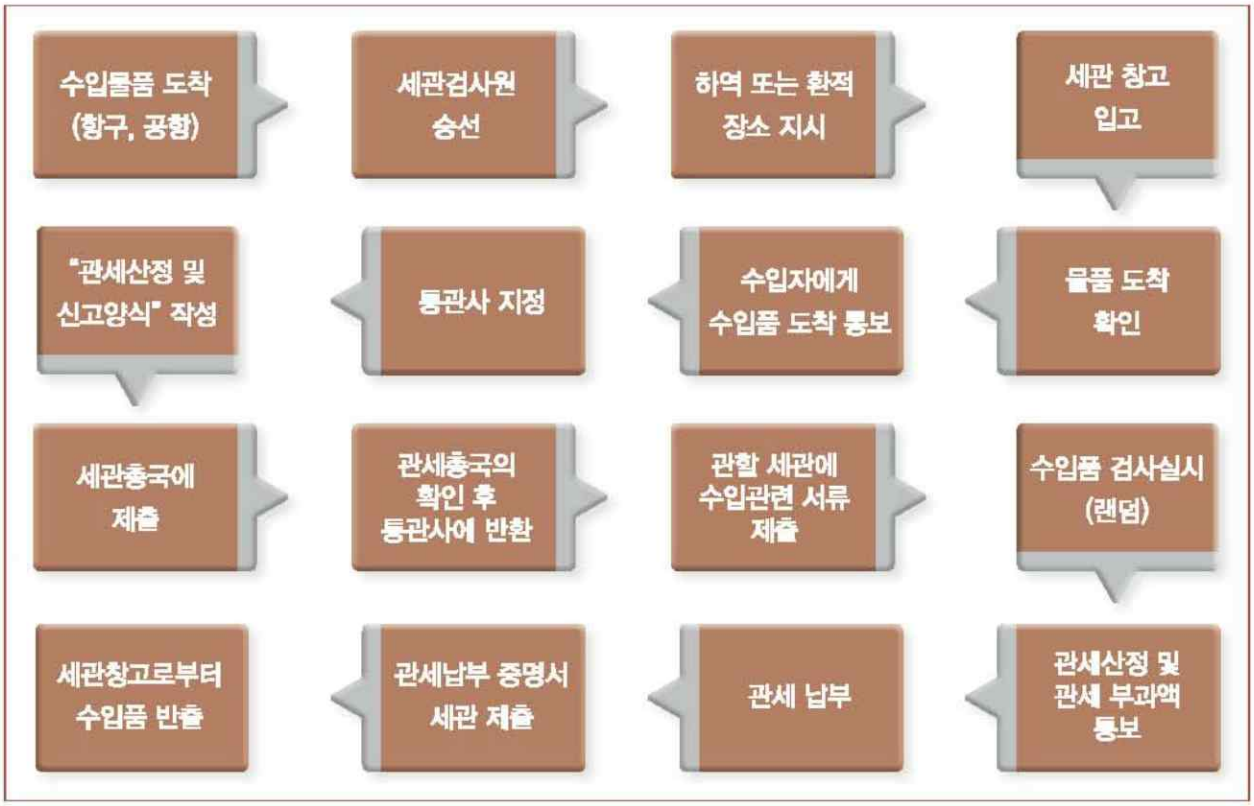

(3) 통관 시 유의 사항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였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된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된다. 라벨을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음식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

발 행 일	2017년 12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 042-481-3204 Fax : 042-481-3299 www.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 쇄 처	(주)협동문고 Tel : 02-545-6188

이 책의 저작권은 관세청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핸드북과 관련된 의견 및 건의사항과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 (kioi_research@origin.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
본 피드백을 통해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통관환경 및 정책 향상을 위해 이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

우 표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정책연구팀 앞

1 3 5 0 3

점선을 따라 자르신 다음 반으로 접어 뒷면에 풀로 붙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뒷면 참조)

독자의 소리

〈한-중미 FTA 활용 핸드북〉
좋은 점, 개선 사항, 활용 여부 등 기타 의견을 보내주세요.

〈한-중미 FTA 활용 핸드북〉 좋은 점

〈한-중미 FTA 활용 핸드북〉 개선 사항

〈한-중미 FTA 활용 핸드북〉 활용 여부

점선을 따라 자르신 다음 반으로 접어 뒷면에 풀로 붙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 는 선

풀 칠 하 는 곳

한-중미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핸드북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